

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총칭북도
도세 감면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
도세 감면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위하여,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세월호 의생자 가족에 대한 2014년 정기분 지역자원시 설세(특정 부동산분) 및 취득세(자동차 등 대체취득시) 면제

4. 검토의견

- 본 도세 감면안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,
- 탑승인원 476명 중 29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되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슬픔과 전반적인 성찰을 불러오게 한 사건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1부.
끝.